소비자보호법

제1장 정의와 총칙

제1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는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상공부

장관: 상공부장관

위원회: 이 법의 제7조에 명시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결정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

상품: 원자재, 물품, 구성요소와 반 가공상품을 포함한 모든 산업, 농업, 동물상품

서비스: 합의하거나 지정한 대가 또는 지정가격지급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무

소비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공급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 매매,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대리인과 중개인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광고인: 여러 선전 및 광고매체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제2조 모든 공급자 또는 광고인은 이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과 그 밖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산자와 상인 간 거래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모든 공급자 또는 광고인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자유로운 선택,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신뢰와 믿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는 명백히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이 문구에는 상품의 올바른 사용방식과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해결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한 모든 영업장은 소비자와 거래 시 영업장에 관한 서신, 영수증, 광고와 모든 문서에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위기, 자연재해,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시장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장관은 결정을 통하여 가격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행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를 입히는 과대광고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독과점 또는 지배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에는 장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과 상승한 가격을 제어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와 독점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상세한 규칙에 대하여 명시한다.

제7조 위원회는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정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출시중단 또는 상품의 회수결정을 공포하고, 상품파기가 위험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법인 경우 파기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경고 또는 예방조치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에게 상품을 회수하여 교환하여 주거나 변경하여 주거나 가격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국내외 관련기준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규정을 준수하여 상거래를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방식을 이용하여 이 조치에

대하여 감시한 후 소비자에게 조치에 대하여 상세하고 투명하고 명백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

제8조 소비자는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 또는 공급 받는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의 겉면에는 가격,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조국가, 사용, 포장, 주요구성성분, 등급, 사용방법과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정한 구매 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받는 경우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 시 피해를 입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상품을 구매 또는

구매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를 공급 또는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경우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기본적인 혜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공급자로부터 모든 상품에 대한 보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보증은 존속하며, 이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소비자는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수령 시 가격, 판매일자, 구매하는 상품의 기능, 수량, 중량 또는 수령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관하여 기재한 증서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소비자는 -파손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상품을 구매한 일자부터 10일까지 상품을 교환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을 구입한 동일한 공급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종류를 정한다.

제12조 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간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증해주어야 한다. 올바른 서비스이용이 침해된 경우

서비스공급에 대한 비용을 환불하여 주거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각 서비스에 대한 보증기간을 지정한다.

제3장 공급자와 광고인과 대리인의 의무

제13조 공급자는 이 법의 제2장에 명시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체결한 합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든 공급자는 이 법의 제4조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기능과 조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보증해주어야 한다.

제15조 모든 공급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상품이 이미 사용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여부에 관계 없이 소비자와 관련기관에 발생 가능한 피해와 피해예방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공급자 또는 광고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또는 가격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광고 또는 허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모든 공급자는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상품에 대한 수리, 교환, 환불 또는 그 밖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 대한 공급자의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모든 조건은 상행위에 관한 계약, 증서, 광고 또는 각서에 명시한 여부에 관계 없이 무효로 본다.

제19조 모든 공급자는 상품을 은닉하거나 상품판매를 거부하거나 일정량의 상품판매 또는 다른 상품과의 묶음판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모든 대리인은 자신이 오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실제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상품에 필요한 부품과 수리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보증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 항에 명시한 보증혜택을 이행할 때까지 1개월이 걸리는 대리인은 보증혜택을 이행할 때까지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동일한 상품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제4장 벌칙과 부칙

제21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을 명하고, 재범 시에는 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관련된 상점의 폐쇄와 상품몰수를 명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 시 배상지급을 판결할 수 있다.

제22조 장관이 지명한 직원들은 이 법과 시행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다. 이 직원들은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임명한다.

제23조 「2000년 제14차 국왕령을 통하여 공포한 국가단체법」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